

위치	오류유		수정 전					수정 후				
40p '③ 소급발급의 신청' 네 번째 줄	개념,	,공식-설명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단, 인도, 중국과의 FTA에서는 선적 후(<mark>인도는 선적일 포함, 중국은 포함하지 않음)</mark> 7일 이내, ASEAN, 베트남과의 FTA에서는 선적 후(선적일 포함)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이 아닌 정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.				
303~304p 개념, (3) 협정별 설 미소기준 규정	네,공식- 설명		적용협정	기준가격	일반물품	농수산물 등		중량기준				농수
		4	싱가포르	관세가격기준	10%	1~24류 적용제외 15~24류 대상 CTHS 충족시 적용 가능	\$	8%	싱가포르	기준가격 	일반물품	등 1~14류 적용제외 15~24류 대상 CTHS 충족시 적용
		;	적용협정	기준가격	일반물품	농수산물 등		중량기준	적용협정	기준가격	일반물품	가능 농수 등
		ш	페루	FOP가격기준	10%	1~21류 적용제외 15~24류 대상 세번변경시 적용가능	,	10%	페루	FOP가격기준	10%	등 1~14류 적용제외 15~24류 대상 세번변경시 적용기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